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 조례개정조례 (안)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7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가. 관장의 업무를 총무과장에서 기획실장이 겸직함
(안 제5조)

나. 영화상영시 대강당 사용료 징수(안 제9조)

○ 오전 25,000원

○ 오후 40,000원

○ 야간 50,000원

다. 영사기 사용료 징수 : 1회 20,000원(안 제9조)

라. 직접 영화관람료 징수(안 제9조)

- 청소년 2,000원(단체 1,500원)
- 군 인 2,500원(단체 2,000원)
- 일 반 3,000원(단체 2,500원)

마. 대강당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요금등의 공공요금으로 총사용료의 100분의 10~100분의 20을 별도 징수(안 제9조)

바. 유료 관람권 발행자에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함(안 제9조)

사.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아.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자. 출장소장이 직접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

개정 내용중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

-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장이 겸직하던 관장을 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(안 제5조)
- 영사기 구입·설치에 따라 출장소장이 관람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근거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영화상영시 대강당 사용료, 영사기 사용료, 전기요금등의 공공요금 별도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(안 제9조)
- 별지 제1호서식 증평문화회관 사용신청서, 제2호서식 증평문화회관 사용허가서, 제3호서식 증평문화회관 사용신청 사항기록부, 제4호서식 업무일지는 행정서식으로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(안 제7조)

붙임

-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(안)